

「남문동일스위트 The Ocean 1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 급 명 : 남문동일스위트 The Ocean 1단지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65-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 ~ 22층 6개동 총 349세대 중 일반분양 349세대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공급 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 영 주 택	59.7264	59	59.7264	21.7437	81.4701	40.2239	121.6940	131	'24년 12월
	64.3663	64	64.3663	23.2656	87.6319	43.3486	130.9805	53	
	74.3166	74	74.3166	26.2344	100.5510	50.0499	150.6009	70	
	75.3291	75	75.3291	26.8371	102.1662	50.7317	152.8979	38	
	84.6526A	84A	84.6526	29.8610	114.5136	57.0108	171.5244	37	
	84.9597B	84B	84.9597	29.4105	114.3702	57.2177	171.5879	20	

※ 본 안내문에 표기된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구 분(약식표기)		59	64	74	75	84A	84B	합 계	
기 관 추 천 특 별 공 급	국가유공자	2(10)	1(5)	1(5)	1(5)	1(5)		6(30)	
	장기복무 제대군인	2(10)	1(5)	1(5)				4(2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10)	1(5)	1(5)				4(20)	
	중소기업 근로자	2(10)	1(5)	1(5)	1(5)	1(5)	1(5)	7(35)	
	장애인	경상남도	3(15)	1(5)	1(5)	1(5)	1(5)	1(5)	8(40)
		부산광역시	1(5)		1(5)				2(10)
		울산광역시	1(5)		1(5)				2(10)
합 계		13(65)	5(25)	7(35)	3(15)	3(15)	2(10)	33(165)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 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자 추첨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기관추천 특별공급 일정 계획 (예정)

■ 일정 계획(예정) 및 유의사항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4.07.31.(수)	건본주택, 홈페이지
특별공급 접수일시	인터넷 청약	2024.08.12.(월) 09:00 ~ 17:30	청약Home (www.applyhome.co.kr)사이트 통한 청약 접수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2024.08.21.(수)	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계약기간		2024.09.02.(월) ~ 2024.09.04.(수)	당사 홍보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65-1번지

※ 상기 일정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주택형별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배정 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입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홍보관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10:00~14:00 / 은행 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31.(수)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등,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선정하여 추천하여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예금 :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창원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

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7.31.(수)예정]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④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⑤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은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IV 기타사항

- 사업 주체는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 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및 분양권 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주택 공급량 > 신청자수)된 주택의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 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위치도 및 견본주택 약도 안내

- 위 치 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65-1번지(남문동일스위트 The Ocean 1단지 앞 홍보관)
- 대표번호 : 055-545-4957
- 홈페이지 : www.남문동일스위트.com

